

[별지 제2호서식]

## 국유림 보호 협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보호 위탁자(지방산림청)를 "갑"이라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국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제외합니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간)로 한다.

제3조 ①"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신고
3.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구제
4. 국유림 경계표주·홍보입간판 등 표지의 보호
5.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존·관리
6.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 등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을"은 전항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갑"과 협의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활동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한다.

③"을"은 전항의 활동을 수행중에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①"갑"은 "을"이 보호하고 있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2.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3.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 등의 산림부산물

②"을"은 ①항 각 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림의 보호·육성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2. 보호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무상양여한 부산물 이외의 산물을 굴·채취한 때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 "을"(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은 선량한 보호·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협약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보호협약 산림 안의 입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제3조제2항의 조건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보호활동 완료 후 즉시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
2.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
3.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긴급한 방재활동 및 그에 수반된 사항
4. 그 밖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인정된 사업과 활동

제8조 ①"갑"은 "을"에게 보호협약 산림에 입산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협의하여 보호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협약 산림의 입구에 표지판·입간판을 설

